

사회통합대상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

[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른 해당자]

1. 공통서류

- 가. 2019학년도 신입생선발 [사회통합대상자] 확인서(본원양식) 1부
- 나.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다. 주민등록등본 1부

2. 지원별 추가 서류

지원 자격	제출 서류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급여 수급자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권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 부모 가족증명서 1부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(차차상위계층, 차상위계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•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1부 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(2017.11. ~ 2018.8.까지 10개월)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수교육대상자 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해당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통보서 1부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교장 추천 ※ 교육급여 수급자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, 기준 중위 60%이하 가구 (차차상위계층)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학교장 추천위원회'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. • 학교장이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• 객관적 증빙서류(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) 1부 		
소득 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 부모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~4호 관련 • 혼인관계증명서(학부모 기준)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1부 • 건강보험 자격 확인(통보) 1부 •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(2018.06 ~ 2019.03 10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첫째 자녀부터 가능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준사관/부사관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 1부(총 재직기간 명시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해 등급 확인서, 유족급여지급 확인서, 산업재해 사망증빙서류, 상병 보상연금 수급증명서 1부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순직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경, 소방대원, 교원 • 순직확인서(관련 사실 확인서) 1부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문화가정 자녀 (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관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•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1부 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 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• 기본증명서 1부 (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 국적자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년·소녀가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형제자매 포함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손가정 학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연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•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1부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연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•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1부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서벽지 거주하는 자 (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관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사실관계확인서(아동복지시설장 날인) 1부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(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(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행) •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		

※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. (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)